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9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민형배 · 이재관 · 김태년

김성환 • 박홍근 • 이정문

이성윤 • 김원이 • 이수진

이기헌 · 소병훈 · 박용갑

의원(12인)

제안이유

국회 청문회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출석을 강제하고, 원격출석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 청문회 개최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로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2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증인이 2번 연속 불출석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로 진행됐습니다.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침해합니다. 주권자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청문회 유명무실화에 대한 시민 분노가 컸던 이유입니다. 현재 취할 수 있는 고발

등 형사 처벌 규정은 사후 조치에 불과합니다.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 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증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을 하도록 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출석과 함께 위증 등의 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청문회의 질적 제고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 나. 출석요구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안 제5조제6항).
- 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및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 라. 청문회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6조의2 신설 등).

- 마.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불출석 등의 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 바. 위증 등의 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14조제1항).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따라야 한다"를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로 한다.

제5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요구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출석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장소에 직접출석하여 선서 및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1항 중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청문

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처벌된다"를 "처벌 또는 구인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증인의 구인) 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관할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으로 하며, 구인장은 위원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한다. 이 경우 집행명령을 받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국회사무처 소속 경위의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4항의 보조를 요구받은 국회사무처 소속 경위는 구인장의 집행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집행은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의 지 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 ⑤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 요구 받은 서류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는 1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요구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 은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	
한 사진 • 영상물(이하 "서류등"	
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	
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	
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	
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	
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u>म</u>
에 <u>따라야 한다</u> .	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영
	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
	할 수 없다.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6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	
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u>다</u>
<단서 신설>	만, 요구서는 국회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민사소송
	법」을 준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메일 등

⑦ · ⑧ (생 략) <신 설>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 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 · 감정인 또는 참고 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 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 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 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u>원격출석한</u>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장 소에 직접 출석하여 선서 및 진술한 것으로 본다.

세6조(증인에	대한	동	행 명	렁)	1
국정감사 •	국정조	사	및	청문	-회

령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 당 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 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 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 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 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 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3
<u>처벌 또는 구인될</u>
수 있다
·.
④ ~ ⑦ (현행과 같음)
세6조의2(증인의 구인) ① 국정감
사와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위
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출석 또는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관
할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인은 위원 회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 부한 구인장으로 하며, 구인장 은 위원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 행한다. 이 경우 집행명령을 받 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 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국회사 무처 소속 경위의 보조를 요구 할 수 있다.
- ③ 제4항의 보조를 요구받은 국회사무처 소속 경위는 구인 장의 집행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 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 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구 인장의 집행은 검사(군검찰관 을 포함한다)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 ⑤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형사소송법」의 구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 기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 명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신 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기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있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5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u></u>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
출한 자, 제출 요구 받은 서류
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0.3
<u>3년</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